



의안번호	제호
------	----

**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9. 11. 15.

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 번 호	제 호
---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11. 15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과태료는 그 부과 근거나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,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상의 사항에 반하도록 규정할 수 없음.
 -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 기재에 해당
 -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목록 통보사항임.
-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자치법규 정비개선(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)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준용대한 내용 삭제(안 제3조 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아님

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(가) 예고기간 : 2019. 10. 02. ~ 2019. 10. 25. (23일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도로철도항공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도로교통과장	김 용 신
안	도로관리팀장	홍 형 선
자	담 당 자	배 채 민 (7 4 6 - 6 2 7 5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~③ (생 략)</p> <p>④ <u>제1항의 과태료 부과·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3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삭 제)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3. 작성자

도로교통과장 김용신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, 과태료 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이의제기)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

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제8조(징수 절차)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·회계법령을 준용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·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**○ 과태료 부과 근거나 절차 정비**

- 「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 제3조제 4항에서 "제1항의 과태료 부과·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"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인용하는 것은 단순 재 기재에 해당하므로 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, 준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.